

## 선거 전 약속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여 거짓말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했으나 배상책임이 부인된 사례

Costello v. Capital Cities Communications Inc.

15 Med. L. Repr 2407(일리노이주 대법원, 1988)

### 사건개요

군위원회 의장이 의장되기 전 선거유세기간동안 신문사 관계자와 만나 통과세 부과 지역의창설과 신종세금의 징수에 관해 반대하는 입장에 서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었는데 그 후위 위진회에서는 이에 배치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신문사는 의장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강장은 신문사와 편집자를 상대로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심법원은 청구원인의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이미 특정이 된 것이라며 파기환송을 하였다. 재심리 끝에 보질손해배상으로 450,000 달러, 벌손해배상으로 600,000 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1 심법원에서 선고되었으나, 항소법원은 일부 견해를 달리하여 실질손해배상 200,000 달러로 감축인용하면서 징벌손해배상부분은 이를 파기,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들이 다시 불복, 위 항소심 인용 실질손해배상부분에 상고를 제기하자 상고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그 부분마저 파기하기에 이른다.

### 판결요지

1. 군위원회 의장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의장의 「거짓말 특허 리더십」이라고 표현한 신문기사의 논급은 그 자체로 금전상 손해없이 제소가 가능한 명예훼손의 성질을 지닌다. 왜냐하면 그러한 언급은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실성이 결여되리라는 청명을 씌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2. 신문사나 편집자의 진실에 대한 조사량도 가 명예훼손적 내용을 수반하고 있는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 공중고발이 선의 가운데 행하여 했음을 인정하여 줄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행하여 졌거나 그러한 고발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실제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 악의가 추단된다.
3. 군위원회 의장이 통과지역 문제가 발생하면 반대를 하겠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하는 진실에 반한 기사를 게재하기에 앞서 신문사가 위원회에 의하여 결의된 통과지역 설치 안건을 부결시키려고 의장이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이상 보질적 악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판결이유(요약)

판사 와드(Ward)는 다음과 같이 재판부의 의견을 표명한다. St Clair 군(이하, 군이라고만 한다) 위원회 의장인 Jerry Costello(이하, Costello 라고만 한다)는 군내에서 일반적으로 구독되고 있는 신문인 Belleville News Democrat(이하, News 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인 Capital CitiesMedia Inc. (이하, CaP Ci. 라고만 한다)와 News 논설란 편집담당이자 Richard

Hargraves(이하, Hargraves 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상에서 Costello 는 피고들이 발행한 1980. 11. 30. 자 News 의 논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당초 소각하되었던 본체 소송은 파기환송되어 재심이리 끝에 1 심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질손해배상으로 금 450,000 달러를, 피고 Cap. Ci 가 원고에게 징벌손해배상으로 금 600,000 달러를 각 지급하도록 명하는 Costello 승소판결이 내렸다. 항소법원은 일부 견해를 달리하여 실질손해배상액을 금 200,000 달러로 감축하면서 징벌손해배상 부분은 이를 파기, 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원은 피고들의 위 실질손해배상 항소심 인용부분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였다. 1980 년 대단좌통과지역 설치기금 마련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일어난 이래 일리노이주의회는 Local Mass Transit Act 에 St. Clair, Madison, Monroe 군의 각 위원회가 통과세 부과지역을 창설할 수 있고, 위원회 의장이 이러한 통과지역을 관장할 수탁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수 수정조항을 입법화하였다. 또한 위 수정조항은 수탁관리인이 일정한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 News 는 통과세 부과지역의 설치와 주민투표 없는 공공교통보조용 판매세 부과를 극력 반대하였고 논의가 진행 중일 당시 원고는 군위원회 의장에 입후보하고 있었다. 원고의 견해를 들어 보기 위한 신문사 관계자들과의 화합에서 Costello 는 그가 당선된다면 그의 첫 임기 중에 어떠한 새로운 세금이라도 주민투표없이 신설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음을 인정했다. Hargraves 는 Costello 가 주민투표없이 통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의장으로서 그러한 세금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적극 행사할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원고의 견해를 듣고 News 는 1980. 10. 19.자 사설에서 군위원회 의장으로 Costello 를 지지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사설에 따르면 Costello 가 News 와의 지지인터뷰에서 그 자신은 주민투표 없는 어떠한 세금의 부과에도 찬성하지 않으며 그의 임기 중 세금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행세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Costello 는 군위원회합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선거후에 통과지역설치 및 판매세 신설논의가 심화되었고 Costello 의 전임자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선거후 처음 열린 1980. 12. 29, 위원회에서 통과지역을 설치하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결의를 하였다. 그날 Costello 는 군위원회 위원으로 통과지역 설치를 반대하는 David Hickey(이하, Hickey 라고만 한다)를 만나 결의를 저지할 방안을 숙의하면서 그 문제가 1981 4. 주민투표의 양제로 주민들에게 제안될 때까지 결의를 보류하는 동의안을 제기하는 데 협조하기로 함과 아울러 Hickey 가 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을 접촉, 설득하기로 하였다. 그날 저녁 선거 후 처음으로 정기위원회 회독이 열렸고 그 자리에는 News 의 군출기자 Steven Pounds 를 포함한 언론관계자등도 참석하였으며 Costello 는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았다. 사회자로서의 역할에 관하여 Costello 는 개정된 군조례 때문에 중요의제에 대한 찬반의 발언조차 할 수 없는 등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미리 Costello 와논의한 바에 따라 Hickey 는 회의 도중에 통과지역창설 동의만을 주민투표시까지 보유하자는 동의를 하였고 Costello 의 형제로서 위원회위원인 Joseph 이 이에 재청하였으나 위 제안은 투표에 부쳐져 22 대 6 으로 부결되었고 결국 창설동의안이 22 대 6 으로 가결되었다. Costello 는 의장으로서 그 안건에

반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대발언을 하지 못하였다. 위원회의 결의 후 즉시 Costello 는 통과지역의 수탁관리인 3 명을 지명하였고 위원회는 이를 추진하였다. 다음날 군위원회가 통과지역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Hargraves 와 News 발행인 Wiles 는 News 에 두 가지 논설을 실기로 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Costello 가 위원회에서 당초 약속한 효과적인 리더쉽을 발휘하지 아니하였음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Hargraves 에 의하여 작성된 이 논설 초안은 Wiles 에 의해 비난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후 다시 수도되어 1980. 12 31 News 의 의견 란에 박스 기사로 「우리의 견해」 라는 제하에 게재되었다. 이 기사가 바로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초점이다. Costello 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부치는 듯한 이 기사가 나가자 1981.1. 4. Costello 는 News 편집자에게 편지를 써 그가 위원회에서 통과지역 설치 안이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또 주민투표시 까지 이를 보유하기 위하여 기울었던 노력을 설명하면서 Hargraves 가 위원회 강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과 강장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News 는 Costello 의 이 편지를 신문에 실지 아니하였다. 1981. 1. 6. 마침내 Costello 는 이 건 제소에 이른다. 소장에 따르면 Costello 는 위 기사 중 (1) Costello 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2).....(3) Costello 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였을 때 그는 바로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4).....(5) 그러나 정작 결정을 하여야 할 시간이 되자 Costello 는 사회봉을 들고 앉아 있기만 하였다 (6) Costello 는 당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단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7) 앞으로 2 년 동안 Costello 의 거짓말 특허리더쉽 아래에 있을 것을 생각만이라도 해 보라는 등의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당심에서 피고가 다투는 요지는 (1) 논설에 있어서 비판적 언급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2)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진실한 것이었다. (3) 명예훼손이라고 지적된 논급들은 헌법상 보장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 (4) 원고는 피고들이 실질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5).....는 것 등이다. 먼저 논설에 있어서 비판적 언급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들 주장을 살핀다. 당원과 달리 하급법원은 일부 판례를 달리 해석하거나 폐기된 판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이 엿보이고 있으나 당원은 관련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주장의 논급 자체가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제소가 가능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다. 당원은 논설에 있어서 적절한 논급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의 불정직성을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불발생 제소가 가능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중이고발형 기사가 명예를 훼손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Chapski 판례(Chafski v. Copley Press (1982), 92 111 24344)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자체로 명예훼손적 방법이 되는 것이 명백하다. 논설에서 표현된 언급들은 순수한 의도로 계획된 것이었다고 간주되기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그것들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의 성질을 지닌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언급은 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실성의 결여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 두번째 피고들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중략) .....셋째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된 논급들은

헌법상 보장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서는 논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뒤에서보는 바와 같이 당원은 이 사진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들이 실질적인 악의를 가지고 명예훼손적 기사를 게재하였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들지 못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 논점을 실질적 악의로 옮겨 본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를 당원이 검토한 결과 명백하고 증명력 있는 증거를 들어 피고들이 실질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자를 원고가 다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얻었다. 심리 도중 피고들은 그들이 주관적으로 Costello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믿고 없었다는 것과 그 믿음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의 지지인터뷰 언동에 비추어 군위원회 의장으로서 주민투표 없는 통과구역 설치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리라는 강철한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식장으로 당선된 이후 첫 위원회회의에서 설치안이 의결되자 자연히 Costello가 거짓말한 것으로 믿게 되었으며 신문 논설을 쓸 때까지 Costello가 설치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당원은 단지 그러한 기사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게재하였다는 진술만으로 피고들이 자동적으로 유리한 평결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과연 그러한 기사게재가 진실로 선의 가운데 행하여 졌는지 여부를 법원은 확정하여야 한다. 하급법원은 이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단지 피고들이 주관적으로 Costello가 거짓말 한 것으로 믿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급심의 결론, 즉 피고들이 실질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는 것과 모순되는 일이다.

원고는 피고들이 실질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증거들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들이 기사게재 당시 Costello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강한 의심을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은 피고들이 Costello의 통과 지역설치안 부결노력에 대한 조사출 전문직업인으로서 부적당하게 하였거나 그점에 없어 부주의하였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고발적 기사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강한 의심을 품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실질적 악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Wanless v Rothballer(1986), 115 111. 24 158, 172). 당원은 WanBess 판례의 판시처럼 언론매체의 진실에 대한 조사가 명예훼손적 공중고발기사 게재의선의성을 인정할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 행하여 졌거나 그러한 기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심이 들게 한 경우에 한하여 언론매체의 진보에 대한 부주의한 경시상태를 추단하고자 한다. Hargraves는 문제의 기사를 쓰기 전에 Hickey, Anderson, Pounds, Wiles 등 4 사람을 만났으나, 군위원회에서 Costello가 통과지역설치 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하여 활동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고 피고들은 군조례에 의하여 Costello가 그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견을 발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기사를 게재하기 전에 과연 원고가 통과지역설치 결의안 의결저지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원고와 접촉을 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비판기사에 대한 공무원의 변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질적 악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Wanless v. Rothballer(1986), 115 111. 24 158, 172). 보질적 악의가 있었다는 또 다른 지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기사의

근거자료를 모두 밝히지 않은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점을 들면서 그에 따라 룬원이 그러한 미제출 근거자료의 존재를 이유로 피고들의 실질적 악의가 증명되었다는 추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소송당사자가 그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합리성을 보여 주는 증거를 제출하는데 고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을 경우 그러한 추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Gard, Illinois Evidence Manual R. 3.23 (2ded.)), 하급법원이 과연 Hargraves 가 어떠한 근거자료를 숨기고 있는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불리한 추단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점에 당원은 견해를 같이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심이리과정에 나타난 증거들은 Costello 가 주민투표 없이 과세통과구역을 설치하는 결정에 반대하였다는 것과 피고들이 선거전 지지인터뷰에서 Costello 가 통과구역설치결정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및 Costello 는 위 위원회 위원이 반대투표를 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다음 주민투표 때까지 결의를 보류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피고들이 문제된 논설의 게재 전에 Costello 의 이러한 활동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 지 못하고 있다. St. Amant 판례(St. Amant v . Thompson(1968), 390 U.S. 727, 20L.Ed. 2d 262, 88 5. Ct 1312)의 corqhr137 에 비추어 배상요건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Costello 의 거짓말과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발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피고들의 강도 높은 의심의 존재를 인정할 어떤 증거도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피고들이 주관적으로 진실하다고 믿는 인상 실질적 악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당원의 독자적인 증거판단에 따르면 원고는 명확하고 증명력 있는 증거로 실질적 악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실질적 악의를 가지고 기사게재를 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1 심 법원과 항소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한다.